2026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노키즈존의 확산과 사회적 쟁점

이름	김*리
전공	공간디자인학과
학번	2026****

노키즈존의 확산과 사회적 쟁점

공간디자인학과 2026** 김****

목차

Ⅰ. 서론
Ⅱ. 노키즈존의 확산 배경
1. 업주의 책임 부담과 법원 판례
2. 일부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동
3. 이용자의 환경 요구
Ⅲ. 노키즈존의 사회적 문제점
1. 아동 인권 침해와 차별 논란
2. 아동의 공간 접근권 제한
3. 사회적 배제의 확대 가능성
Ⅳ. 노키즈존의 대안 및 개선방안
1. 케어키즈존을 통한 보호자의 책임강화
2. 안전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Ⅴ.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한국사회는 합계출산율 0.8명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에 직면했다[1].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아동을 배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은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을 일컫는 단어로 주로 카페나 식당에 도입되었다. 노키즈존 사업장의 정보를 수집한 '키즈존/ 노키즈존 지도'를

[1] 1) 국가통계포털(KOSIS),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2023년에 국내에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업장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노키즈존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키즈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동을 양육한다는 이유만으로 업장 자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측은 아이의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노키즈존을 운영하여 아동과 이를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는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키즈존이 확산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노키즈존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노키즈존의 확산 배경

노키즈존이 확산된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업주의 책임 부담과 판례, 일부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동, 이용자의 환경 요구로 나눌 수 있다.

1. 업주의 책임 부담과 법원 판례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지 사업주 200여명에게 조사한 결과 1위가 '아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답했다[3]. 이는 중복응답기준 68%였다. 사업주들이 아동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는 법원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2011년 부산 시내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2-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이 사건에 대해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높은 온도의 물을 운반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종업원과, 직원 안전 교육이 미흡했던 식당 주인의 과실이 70%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의 책임 소재 비중에 대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의 책임 비중이 70.3%, 관리 영업자의 책임 소재 비중이 17.6%라고 답변한 결과와는 대비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춘천에 식당 내부 통로에 세워둔 유모차에 종업원이 된장찌개를 쏟아 4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5]. 당시 식당 측은 식당 내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식당 주인의 과실을 70%라고 판단했고 치료비 70%와 위자료를 더해 1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업주는 법적 책임

[2] 노키즈존/키즈존 지도(yesnokids), 「키즈존/노키즈존 지도」.

[3] KBS(2023.12.27), 「[단독] '노키즈존', 첫 전수조사...저출생 영향 분석」.

[4] 연합뉴스(2013.11.22), 「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5] KBS(2015.08.10),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아기 화상...책임은?」, KBS 뉴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갖게 된다. 높은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금은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한 번의 사고로도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가게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인터넷 후기나 언론 보도로 인해 영업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일부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동

일부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제지하지 않아 업주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동이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이다. 2015년 경기 남양주 덕소박물관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코끼리 상아 화석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가족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6]. 4세 아이가 화석을 만지다 바닥에 떨어트렸고 부모는 이를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박물관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가거나 컵으로 아이의 소변을 받는 등 일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 논란을 야기했다. 업주에게 이런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오는 피로감은 노키즈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3. 이용자 환경 요구와 찬성 여론

노키즈존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3년 기준 찬성하는 입장이 61.9%, 반대 입장이 23.9%로 찬성 입장이 다수였다[7]. 도입의 찬성 이유로는 '어린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아서', '손님들도 불편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등 어린이 관련 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경험한 기억이 있냐고 물었을 때 93.1%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8]. 이는 성별, 연령별, 자녀유무 등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불편을 경험했던 장소로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화 공연장(16.9%) 세 번째가 쇼핑센터(6.4%)로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업주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노키즈존의 사회적 문제점

1. 아동 인권 침해와 차별 논란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 의견이 존재함과 동시에 노키즈존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역시 존재한다. 아동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동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업주가 문제행동을 하는 손님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동 전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는 노키즈존을 차별행위라고

[6] 연합뉴스(2015.08.03), 「박물관 상아화석 깨뜨리고 달아난 가족...CCTV 공개」, 연합뉴스.

[7]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2023), 「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25~26쪽.

[8] 김도균·유보배(2016),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진단』 제221호, 경기연구원, 5쪽.

판단했다[9]. 인권위가 2017년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용대상에서 13세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 운영자들에게는 헌법 제 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합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 대한 상업화가 심해지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이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2. 아동과 보호자의 공간 접근권 제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아동과 보호자의 공간 이용 자체를 제한한다. 카페나 식당과 같은 상업 공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노키즈존으로 아동이 이런 공간의 접근 자체가 제한된다면 다양한 공공예절을 학습하고 타인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줄어든다. 아동의 사회성 형성은 개인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 구성원 양성과도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노키즈존이 늘어나면 부모는 식당, 카페, 문화시설의 선택폭이 줄어든다. 같은 소비자임에도 이용가능한 공간이 제한된다. 또한 아이의 행동이 주변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공장소의 이용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이 현상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가족 단위의 외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양육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저출산 현상이 문제되는 현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10].

3. 사회적 배제의 확대 가능성

특정 집단 전체를 배제하는 방식이 정당화될 경우 유사한 배제 논리가 다른 집단에게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노키즈존은 일부 보호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 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동 집단 전체를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판단하는 인식이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아동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노00존'이 등장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손님을 거부하는 노 시니어존(no senior zone) , 12세 이상 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 유스 존(no youth zone), 노 장애인 존 등등 이미 노키즈존을 이어 또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형태의 공간들이 등장했다.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노키즈존이 정당화된다면 사회적 배제는 아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2017.11.24.

[10] 김소연·안선경·이지선, 「아동의 다양성 교육 경험이 노키즈존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인식과 아동권리 인식의 이중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제29권 제3호, 2025, 108-109쪽.

또한 아동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노키즈존의 확산을 정당화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원인 중 하나로서 '맘충'이라는 표현의 등장을 주목해야한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훈육하지 않는 일부 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해 쓰이는 '맘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일부 사례가 전체 부모 집단의 특성인 것 처럼 일반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 전체를 민폐집단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으며, 보호자는 자기 검열을 통해 결과적으로 카페나 식당의 이용 자체를 망설일 수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공공공간 이용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Ⅳ. 노키즈존의 대안 및 개선방안

1. 케어키즈존을 통한 보호자 책임 강화

노키즈존을 운영하게 된 업주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동 전체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대체할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키즈존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케어키즈존이 있다. 케어키즈존은 노키즈존이 사람들 사이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생긴 대안적 개념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대안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언뜻 보면 노키즈존과 케어키즈존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엄연히 둘은 다르다. 노키즈존은 아이와 그 부모의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케어키즈존은 가게를 이용 가능하되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회 제공유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대상이 특정 연령 이하 아동 전체가 아닌 보호자와 아동 모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접근 방식도 특정 집단의 배제가 아닌 관리와 공존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케어키즈존 관련 인식 평가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유자녀 응답자에서 노키즈존이 아닌 '케어키즈존', '노 배드 페런츠 존'이라면 좀 더 편하게 매장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11]. 또한 실제로 케어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케어키즈존 안내 입간판을 세운 이후부터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부모가 훈육하는 등 아이 동반 손님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12]. 이런 방법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보호자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된다는 점에서 케어키즈존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 안전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

다른 방안으로는 업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사업장 내 시설 관리 소홀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법원이 업주의 책임을 인정했을 때 보험사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업주의 책임 자체가 줄어들거나 명확해지지 않는다. 따

[11]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앞의 자료, 36쪽.

[12] 최인식, 「노키즈존 대신 케어키즈존... 공존의 해법 될까」, 『울산일보』, 2024.11.10

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이나 카페를 대상으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뜨거운 음식 운반구역 표시, 유아용 의자 점검, 직원 안전 교육 이수, 위험구역 표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면 업주는 어디까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 법원은 업주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지켰는가를 먼저 판단해 법정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업주에게는 지자체가 업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높일 수 있도록 '아동 안전 업소' 와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시설 개선비나 안전교육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노키즈존의 확산 배경과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노키즈존은 단순히 아동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업주의 법적 책임 부담, 일부 보호자의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등장한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은 아동 인권 침해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키즈존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모두 업주의 이기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모든 책임을 보호자에게만 돌릴 수도 없다. 결국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제도적 보완, 그리고 아동을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노키즈존 문제는 아동과 보호자, 업주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김도균·유보배,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경기연구원『이슈&진단』제221호, 2016.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인식 조사」, 2023,
김소연·안선경·이지선, 「아동의 다양성 교육 경험이 노키즈존 인식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인식과 아동권리 인식의 이중매개효과」,『아동과 권리』, 제29권 제3호
2. 인터넷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2017.11.24.,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1837&menuid=001004002001 (검색일: 2026.06.1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합계출산율」,

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detailContents.do?statJipyoId=3643&vStatJipyoId=4854&listId=A (검색일: 2026.06.13).
Yes No Kids,「노키즈존 지도」, https://sites.google.com/view/yesnokids (검색일: 2026.06.13).
연합뉴스,「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2013.11.22., https://www.yna.co.kr/view/AKR20131122112800051 (검색일: 2026.06.13).
연합뉴스,「4살 아이가 깬 코끼리 상아 화석…그냥 떠난 가족 논란」, 2015.08.03., https://www.yna.co.kr/view/AKR20150803010700060 (검색일: 2026.06.13).
KBS 뉴스,「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아기 화상…책임은?」, 2015.09.1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27458 (검색일: 2026.06.13).
KBS 뉴스,「노키즈존 운영 이유 1위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3223 (검색일: 2026.06.13).
최인식,「노키즈존 대신 케어키즈존…공존의 해법 될까」,『울산일보』, 2024.11.10.,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840 (검색일: 2026.06.13)